

전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나395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나395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324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법정대리인(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유규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변론종결 2021. 11. 18.

판결선고 2022. 1. 2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324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598,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차1883호로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2.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정본은 2019. 1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소송절차(전주지방법원 2019가단32493호)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 13. ‘전주시 완산구 K, L호’에서 ‘전주시 완산구 M, N호’로 주거를 옮겼으나, 법원에 주소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소환장을 피고의 이전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K, L호’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20. 7. 1. 위 소환장을 발송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8. 14. 제1회 변론을 열어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20. 8. 28.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정본이 이사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2020. 9.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19.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1. 4. 26.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주소변경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였어야 함은 물론 법원에 문의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할 때까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이 2020. 8. 28.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9.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더라도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이사 및 주소변경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제1심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주소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